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37,642,461	37,129,274
일반회계	1,059,632,340	31,788,970
특별회계	178,010,121	5,340,304
공기업특별회계	99,700,299	2,991,00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582,070	1,247,4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118,229	1,743,547
기타특별회계	78,309,822	2,349,295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3,706,381	1,011,1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07,307	189,21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714,052	51,422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10	96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894,371	416,831
주택사업특별회계	2,815,351	84,4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86,889	41,607
기반시설특별회계	474,546	14,236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31,440	943
주차장특별회계	17,976,275	539,28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9,989,63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이 정해진 외부기관 전입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